

4대 사회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등 설비건설 업계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1.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신고

□도 입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소득자료(임금지급조서)를 매분기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법 개정 시행(소득세법 제164조)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 저소득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의 현금을 환급해주는 제도('08년 시행)
- 수급대상자 : 일정소득수준 이하 근로소득자 (168만명 추정)
 - 최상위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인 극빈층
- 신규 소득과약 대상(380만명 추정)
 - 일용근로자와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시간제근로자
- 국세청, 고용실태전담반 편성 '06. 6월까지 일제 점검

□지급조서 시행

- 2006년 :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없음(유예기간)
- 2007년부터 : 미제출 총금액의 2%를 가산세로 추정

소득세법 부칙 <제7837호, 2005.12.31>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81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적용대상 및 신고

- 종업원 1인이상 자영업자 : 다음해 2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사업주
 - 매분기(4, 7, 10, 1월) 인건비지급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 ※ 확대시행
 - 기 존 : 1년미만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현 행 : '06.1.1이후 고용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 8만원이하 면세(소득세법 제47조)
- 일용근로자 일급이 8만원이하(실체는 10만 7천원)는 원천징수대상은 아니지만 지급조서는 신고
 -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은 징수대상 아님

□EITC 시행을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

○신규 소득과약 대상(380만명)에 대한 통합전산망을 10월 까지 구축 예정

○통합전산망 자료 내용

- 4대보험 통합자료
- 일용근로자 과세자료
- 국세통합전산망자료
-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고용자료
-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보유자료

□자료제공에 대한 법규정

○각 법에서는 세금추징 등을 목적으로 자료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토록 명시되어 있음

국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자료의 요청)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법 제83조(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를 산출기관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지급조서 신고에 따른 문제점

- 국세청에 제출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자료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에 제공시 보험료 소급추징(3년) 우려
- 행정부담 가중
 - 일용근로자 특성상 수시 이동으로 인력관리 어려움
-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주민등록말소자의 인적사항 제출 기피로 사업주 부담 가중

□대한설비건설협회 추진사항

- 재경부와 국세청에 건의('06.4.19)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탄원서 제출('06.4.20)
- 탄원서 건의 내용
 - 지급조서 자료는 EITC 이외의 사용 금지 요청
 - 임금지급조서 유예기간 연장 요청(2008년까지)
-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건의문 제출 ('06.4.25)
 - 연금·건강보험, 공공·민간발주공사 정산 제도 확정 후 EITC시행 건의
- 대한설비건설협회 주관 4개 단체 회의('06.4.26)
 - 4개단체 연명으로 관련부처 탄원서 건의 공동 합의
 - 연금·건강보험, 공공·민간발주공사 정산 제도 조속 도입
 - EITC자료는 정산제도 확정 후 자료 공유 요청
- “건설현장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회의 참석('06.4.28)
 - 회의 주최 : 청와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참석 : 14개 관련부처 및 단체(16명)
 - (재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국세청, 관련공단 및 건설단체, 민노총, 건산연)
 - 본회 김 경희상임이사 참석 건의
 - 1)의무보험 정산제도 조속시행
 - 2)EITC 자료 정산제도 정착 후 공유
 - 3)특히 민간발주공사 정산 및 미반영시 처벌조항 신설 건의

- 4개단체 공동 연맹 탄원서제출('06.5.30)
 - 제출 : 청와대민민위, 국회재경위, 재경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 내용 : (협회소식 참조)

2.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적용요율

- 국민연금 : 직접노무비의 9%(사업주 4.5%, 일용근로자 4.5%)
- 건강보험 : 직접노무비의 4.48%(사업주 2.24%, 일용근로자 2.24%)
- 사업주부담분 합계 : 6.74%

□ 공사원가 반영(사업주부담분)

- 국민연금 : 2.41%(사업주부담분 54% 적용)
- 건강보험 : 1.25%(사업주부담분 56% 적용)

□ 대한설비건설협회 추진사항

사업주부담분 공사원가반영 및 관련법 개정 추진 사항

- 탄원서 제출('03.7) : 청와대, 국회, 건교부, 재경부, 보건복지부 등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 공사원가 반영('03.12)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제비율 반영('04.3)
 - 국민연금 : 직접노무비 0.99%(22%)
 - 건강보험 : 직접노무비 0.52%(24.7%)
- 건설교통부 건의('04.6) : 박종학 회장, 건교부장관에게 직접 건의
 - 의무보험료 납부 후 정산이 되도록 제도 정비 건의
- 의무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건산법 개정 건의('04.7)

- 건교부, 건산법 제22조제5항 개정(신설, '04.12)
 - 의무보험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 공사원가에 반영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제비율 개정 추진('04.7) : 보험요율 상향 조정 건의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제비율 상향조정('05.3)
 - 국민연금 : 직접노무비 2.41%(54%)
 - 건강보험 : 직접노무비 1.25%(56%)
- 건교부, 공사원가계산제비율 고시('05.12)
- 서울시회 회장, 대통령 면담 제도정비 건의('06.3.22)
- 재경부,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실비정산토록 제도개선 검토 중('06.4.현재)

□ 현안문제

- 공공공사 보험료의 공사원가 반영분(국민연금 : 54%, 건강보험 : 56%) 부족으로 사업주부담 증가
- 민간발주공사, 공사원가에 보험료 미반영
- 일용근로자 보험료 납부거부로 근로자부담금까지 사업주가 대납(13.48%)

□ 향후추진계획

- 공공발주공사 실비 보험료 확보
 - 재경부와 협의, 공공공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요비용 실비 정산 조속 추진
- 민간발주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원가반영
 - 건교부와 협의하여 민간공사 부분도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제도 개선 추진(범위만시 처벌조항 신설 및 실비 정산 추진) ●